

교통사고 처리협조 요청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본인은 아래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하여 협조요청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고의사고, 사고내용 조작행위는 형법상 금지되는 범죄로 보험금 청구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관련사항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방향에서	방향으로 운행중	
기타사항	사고당시속도 : () Km	사고유형 : 접촉 추돌 후진 추락 기타()	
	노면 : 건조, 습기, 빙설, 기타()	중앙선 : 유 · 무	신호등 : 유 · 무
	음주운전 : 유, 무	혈중알콜농도 () %	정상 ()
경찰신고			

메리츠화재가입차량

차량번호	차명	차량색상
등록증상소유자	전화번호	기타
실제소유자	관계	전화번호

운전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실제소유자와의관계	
자택연락처	직장연락처	기타연락처	
면허번호	면허증별	유효기간	
면허유효여부	면허취소중 ()	면허정지기간중 ()	정상 ()

사고약도

상대차량 및 운전자 관련사항

차량번호	색상
운전자	
전화번호	
보험가입사	

목격자정보

성명	
전화번호	

부상자 및 피해물

피해자명	외	명
피해물명	외	명

보험금 청구 및 위임장

- 상기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고로 피해자(피해물)에 대한 합의 및 손해배상금지급 등의 권한일체를 귀사에 위임하며 치료비(원상회복비)의 청구권 및 영수권을 치료병원장(수리처)의 대표에게 위임합니다.

청구 및 위임일자

년 월 일

청구 및 위임자의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인)

주민번호 : _____ - _____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잔존물대위, 구상업무 관련) -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사업무 - 자동차장기 연계 자동접수 서비스(당사 자동차보상 처리 받은 피보험자/피해자가, 당사에 장기 상해 담보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보상 종결 후 자동으로 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보상 여부를 검토해드리는 서비스)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단, 미지급/미환급금이 남아 있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민감정보	<p>개인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p> <p>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개인(신용)정보	<p>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p> <p>· 일반개인정보 가족관계증명, 차량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운전면허정보,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주민등록(초)등본 상의 정보</p> <p>·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p> <p>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및 법령상 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계약관계자 지정 정보수신인(자동차장기 연계 자동접수 서비스에 한함) - 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 차량수리유관업체 : 정비업체, 부품업체, 유리업체, 렌터카업체, 견인업체 등(보험개발원을 통한 경우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 서비스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업무지원 등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보험금 등 출수납)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등) - 실명/본인인증기관 : 홈페이지, 모바일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 차량수리유관업체 : 보험금 지급 및 심사 업무지원
보유 및 이용기간	<p>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p>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계약 가입 판단 지원, 보험계약 공동인수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개인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기왕증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u>민감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차량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증명,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u>개인신용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meritzfire.com]에서 확인 가능)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 - 금융거래기관: 계좌개설 금융기관 - 보험협회 등: 생명·손해보험협회 - 실명/본인인증기관(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 등(자동차-장기 연계 자동접수 서비스에 한함)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사고·보험사기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교통사고조사기록, 운전면허정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여부 확인, 보험사고, 보험사기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률에 의한 업무수행, 보험사고관련 구상등 - 금융거래기관: 예금주 본인 확인 - 보험협회: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 실명/본인인증기관: 홈페이지, 모바일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개인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 조사기록(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위 <u>민감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의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 사업자등록상의 정보, 신분증 진위여부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보험금 지급 및 사고정보는 과거 및 현재의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 내용을 포함 함) 위 <u>개인신용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작성일	년 월 일	동의자	[의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	-------	-----	-------------	------	------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미지급/미환급금이 남아있거나 수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거래 종료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안내장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보험 보험담보 종류별 구체적 보험금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지급항목별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배상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대물배상	전손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등
	분손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등

* 보험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해당되는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보상직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지불보증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 II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원인에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 가자급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자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자급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가자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자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자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청구서류 및 절차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가 필요한 해당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1조, 건설교통부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 5조 제1항 및 제2항)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부모, 배우자 및 자녀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단, 2015.3.12 이전 사고는 2년)

> 장애분쟁 해결

부상 치료후 장애가 발생시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애해판)

> 간접손해 보험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고용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거나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 선임시 발생하는 비용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보험회사 부담
 - ① 손해사정인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은 때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함)를 받은 날 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인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고객님 부담
 - ①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②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지급 기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서면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원하는 방법(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험법 제 189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

>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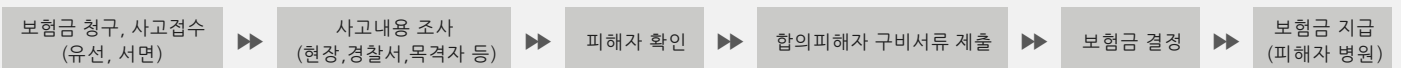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 기타문의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심사 절차

> 대인사고 보상절차



> 대물사고 보상절차

